

4단계 BK21 식물생명공학교육연구팀 운영 내규

2021.11.1. 제정

2022. 6. 1 일부개정

<4단계 BK21 식물생명공학교육연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식물생명공학교육연구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 기준을 적용할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본 사업이 시작된 2020년 9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조(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규정」 제6장 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교육연구팀장
2. 운영위원 부위원장: 교육연구팀 부팀장

제4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4단계 BK21사업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연구팀에서 사전 검증한다.

1. 최근 3년간 주저자 SCIE급 논문 전수 4편 이상. <개정 2022. 6. 1>
2. 신임 교수 우선 참여.
3.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제2항 제1호와 제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 사항은 교육연구팀장 및 부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참여교수의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연구영역을 우선시하여 별표1의 참여교수 연구역량 평가기준을 따른다.
5. 책정된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로 한다.

제5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 당 6 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6. 1>

- ⑥ 참여대학원생은 졸업 학기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⑦ 매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 취업예정자 파악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취업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제6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 할수 있다.

-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 ②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학위 순위별로 우선하며, 성적 및 논문실적 등 별표3의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평가 기준의 우수성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신입생은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장 및 부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선발 인원 및 지원 금액은 교육연구팀장 및 부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참여율 관리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원금은 학기별로 지급하거나 매달 말일 지급한다. <개정 2022. 6. 1>**

제7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팀은 박사후연구원(또는 연구교수)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과 학과의 임용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 선발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참여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을 진행하며, 참여교수는 연구 능력(SCIE급 논문 발표)이 검증된 인력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2. 6. 1>

③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의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개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필요한 경우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⑥ 신진연구인력은 별표2의 신진연구인력 연구역량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신진연구인력은 국외 출장(휴가)을 가기 전 해당 사실을 교육연구팀에 먼저 보고하여 내부품의를 통하여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출장 및 휴가의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투고 시, 별표4와 같이 교육연구팀 소속을 기재하고,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⑨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과 우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Research Coordinator 담당 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팀 지원 50%, 연구 50%
2. 그 외 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팀 지원 20%, 연구 80%

제8조(행정직원) ①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은 사업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된직원은 복무와 근로조건을 따른다.

- ②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은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며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 사업팀의 발전과 능률향상에 노력한다.
- ③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평일 9:00~18:00 원칙으로 하되 탄력 근무가능,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의 특성 또는 직무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교육연구팀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⑥ 임금은 교육연구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⑦ 교육연구팀장은 불규칙한 연장근로 발생으로 인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그 지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월평균 연장근로수당(가산 포함) 또는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행정직원이 교육연구팀의 발전과 능률향상을 위해 노력과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학술대회 및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규정 인정확인서, 부설 학술 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크<양식 1> 및 장기해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부품의를 통하여 지원 승인을 우선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술대회(단기연수) 지원의 국제화 경비 집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저명학회 주관(국내학회와 공동주관 포함)

2. 발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국적이 4개국 이상(한국 포함)의 학회

3. 총 구두 발표 총 논문 20건 이상

4. 총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5.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총 구두 발표 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논문 1/3 이상

③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영리 목적의 부실학회·

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지원할 수 없다.

④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 1편당 제1저자인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국제화 경비를 지원한다.

⑤ 국제학술대회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대학 여비 기준), 학회등록비이며, 지원신청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체재비는 2주 이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⑧ 장기연수지원대상자는 교육연구팀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⑨ 장기연수지원대상자는 제출한 장기해외연수계획서와 연수 대상기관, 연구 관심 분야,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육연구팀장이 선정한다.

⑩ 장기연수지원신청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⑪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해외석학은 교육연구팀의 공동연구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적 활용 효과가 인정되는 인사에 한하여 초빙할 수 있다.

⑬ 초빙된 해외석학은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⑭ 해외석학초빙 시 수반되는 비용은 강연료 및 자문료 혹은 체재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⑮ 해외석학초빙 경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급 기준

직급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1)	교육 · 연구경력 (기준2)
A급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B급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2. 강연료

구분	국외 전문가 강연료	비고
A급	(1,500 \$ / 회) 이하	제세포함
B급	(1,000 \$ / 회) 이하	제세포함

3. 자문료

구분	국외 전문가		비고
	장기자문료 (월기본급)	단기자문료 (일기본급)	
A급	6,000 \$/월 이하	300 \$/일 이하	제세포함
B급	4,000 \$/월 이하	250 \$/일 이하	제세포함

4. 국외 전문가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5. 국외 전문가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6. 체재비(단위: US\$)

구분	지역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교통비 포함)	식비
A급	서울	비즈니스 클래스	278	72	150
	서울 외		246	72	130
B급	서울	이코노미 클래스	251	72	135
	서울 외		219	72	115

제10조(국내 전문가활용) ① 교육연구팀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향후
교육연구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하여 초빙한다.
②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급 기준

직급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1)	교육 · 연구경력 (기준2)
A급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B급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2. 강연료 : 50만원/회 이하(A급, B급 구분 없음)

구분	국내 전문가		비고
	장기자문료 (일기본급)	단기자문료 (시간기본급)	
A급	300,000원/일 이하	150,000원/시간 이하	제세포함
B급	250,000원/일 이하	100,000원/시간 이하	제세포함

3. 자문료

4. 국내 전문가 장기자문 :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2회 이상의 자문
5. 국내 전문가 단기자문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

[별표1] 참여교수 연구역량 평가 기준 <개정 2022. 6. 1>

구분	항목	평가 수식	점수
정량 평가	연구비 수주액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참여교수 정부(지자체 포함) 연구비 수주실적 중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나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된(입금기준) 금액의 합	10
	<u>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환산 편수</u>	(참여교수 주저자 수×주저자 환산편수+참여교수 기타저자 수×기타저자 환산편수)의 합 ※ 주저자 환산편수=MIN((1/주저자 수+0.5), 0.5) ※ 기타저자 환산편수=(1-주저자 환산편수*주저자 수)/기타저자 수	10
	<u>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환 산 보정 IF</u>	(총 환산편수×보정IF)의 합 ※ 보정IF=IF/Top 20% IF평균	20
	<u>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환 산 보정 ES</u>	(총 환산편수×보정ES)의 합 ※ 보정ES=ES/Top 20% ES평균	10
	국내외 특허 건수	((가중치/특허의 총 발명인 수) ×발명인 중 참여교수 수)의 합 ※ 가중치: 주요해외특허 : 기타해외특허 : 국내특허 = 5 : 2 : 1 *주요해외특허=미국, 유럽, 일본특허청 등록 특허	10
	국내외 기술이전 건수	(산학협력단으로 입금이 확인된 총 수입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의 합	10
정성 평가	교육연구팀 운영 기여도		30

비고:

- 연구성과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에게 균등 지급할 수 있다.
- 논문의 주저자는 교신저자를 포함한다.

[별표2] 신진연구인력 연구역량 평가기준 <개정 2022. 6. 1>

구분	항목	평가 수식	점수
정량 평가	<u>국제저명학술지(</u> <u>SCIE, SSCI, A&H)</u> <u>환산 편수</u>	(주저자 중 신진연구인력 수×주저자 환산편수 +기타저자 중 신진연구인력 수×기타저자 환산 편수)의 합 ※ 주저자 환산편수=MIN(1/주저자 수+0.5),0.5) ※ 기타저자 환산편수 $=(1-\text{주저자 환산편수} * \text{주 저자 수}) / \text{기타저자 수}$	40
	<u>국제저명학술지(</u> <u>SCIE, SSCI, A&HCI)환</u> <u>산 보정 IF</u>	(총 환산편수×보정IF)의 합 ※ 보정IF=IF/Top20% IF평균 (가중치/총저자수×논문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인원)의 합 ※ 가중치: 국제발표 : 국내발표 = 2 : 1	40
정성 평가	교육연구팀 운영 기여도		20

비고:

- 연구성과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한다.
- 논문의 주저자는 교신저자를 포함한다.

[별표3]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평가기준 <개정 2022. 6. 1>

구분	항목	평가 수식	점수
정량 평가	성적(10점)	학부성적 (석사1학기)	학부성적 전체성적 4.0이상 10점
		대학원성적 (석박사2~4학기)	대학원 직전학기 4.0이상 10점
	논문실적 (40점)	<u>국제저명학술지</u> <u>(SCIE)</u> <u>환산 편수(15점)</u>	(주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수×주저자 환산편수+기타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수×기타저자 환산편수)의 합 ※ 주저자 환산편수 =MIN(1/주저자 수+0.5),0.5) ※ 기타저자 환산편수 =(1-주저자 환산편수*주저자 수)/기타저자 수
		<u>국제저명학술지</u> <u>(SCIE)</u> <u>환산 보정 IF</u> <u>(15점)</u>	(총 환산편수×보정IF)의 합 ※ 보정IF=IF/Top20% IF평균
		<u>학술대회 발표</u> <u>논문 환산 편수</u> <u>(10점)</u>	(가중치/총저자수×논문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인원)의 합 ※ 가중치: 국제발표 : 국내발표 = 2 : 1
	우수논문 수상 실적	한 건당	10
	우수포스터 수상 실적	한 건당	10
	참여율 및 기여도		30

비고:

- 연구성과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대학원생은 참여 기간 동안의 R&D참여율 기준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 논문의 주저자는 교신저자를 포함한다.

[별표4] 논문투고시, 교육연구팀 표기형식

구분	표기형식		
	국문	영문	
소속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식물생명공학교육연구팀	BK21 FOUR R&E Center for Plant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사사	다른과제(XXXX) 와 4단계 BK21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본 연구는 XXXX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사업(과제번호 4299991014324)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XXXX and the BK21 FOUR program (Grant No. 4299991014324) fund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4단계 BK21 사업에서만 지원받은 경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사업(과제번호 4299991014324)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program (Grant No. 4299991014324) funded by National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 양식 1 >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본교과제번호		연구책임자	대학 과 000
과제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허위 학술단체 리스트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에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